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6. 26 선고 2023나131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6. 26 선고 2023나1310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가합5250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고은

변론종결 2024. 5. 8.

판결선고 2024. 6. 26.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가합5250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405,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 회사가 파산신청 6개월 전에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4호가 정한 ‘파산 신청이 있기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한다. 선택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 내지 3호에서 정한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08,405,703원의 한도에서 부인되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8,405,7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채무자 회사는 J협회의 공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었고, 영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 내지 4호의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부인대상 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되는 무상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행위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76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본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쌍무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상행위라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에 미치지 못해 무상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유상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에서 정한 부인대상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 부인대상 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2022. 4. 25.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전 60일 이내인 2022. 2. 25.보다 앞선 2021. 12. 30.에 체결된 것으로(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2. 1. 3.로 파산신청 전 60일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에 따른 비본지 위기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60일을 초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사의 '지급정지' 전 60일 이내에 행해졌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에서 정한 부인대상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 부인대상 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파산관재인이 부담한다.

여기서 지급정지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자력의 결핍이란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본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채무를 변제할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상태에 빠져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사의 파산신청 '전'에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지급정지가 있는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지급정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에서 정한 부인대상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부인대상 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가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이라는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8호증, 을나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회사의 적극재산은 36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① 채권자 회사에 대한 채무 235,000,000원, ②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원금 248,000,000원, ③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109,000,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특정한 채권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 회사 등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로서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상당성 항변에 관한 판단(부인대상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J협회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영업을 정상화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당성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무자 회사가 2021년 9월 무렵 J협회로부터 공문을 받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공장)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사무실(공장)만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 등 다른 방법의 도모 없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반드시 매도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② 실제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새로운 장소로 사무실(공장)을 이전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서 2022. 3.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였는데, 위 명도일로부터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2022. 4. 25. 채무자 회사는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장소로 사무실(공장)을 옮겨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채무자 회사는 매매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변제자력을 얻어 사업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유해성을 정당화할 만큼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불가피한 행위라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채무 변제력을 갖추고자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실질을 같이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을나 제4,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도 3억 9,000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인 3억 6,000만 원을 상회한다.

② 피고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사업 확장을 위해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사무실(공장)을 옮겨야 할 사정이 생긴 채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매수 경위를 밝히고 있다. I의 주소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의 M호(을나 제2호증)인 점,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21. 9. 28. '산업집적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입주 자격 없는 건설사가 매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경우 행정처분 내지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니 조속히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점은 위와 같은 피고의 매수 경위에 대한 설명에 부합한다.

또한 위와 같은 매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과 잔금 지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I이 채무자 회사와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거래처인 채무자 회사의 재정 상태나 채무 상황까지 알 수 있는 관계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에 K(청구금액 20,350,000원), 주식회사 L(청구금액 12,556,896원)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21. 12. 29. 위 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말소되었고, 그 외 이 사건 부동산에 일반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등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재정 악화를 추단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⑤ I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채무자 회사로부터 공사 하도급 계약의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사무실(공장)을 옮겨야 할 사유가 생겼으므로, 피고로서는 채무자 회사가 사무실(공장)을 옮겨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해야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 하에, I의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I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2. 1. 4. 채무자 회사로부터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 방식으로 미지급 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소결론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재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기우중, 판사 이형원, 판사 신옥영